

	<b>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규정</b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7. 3. 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산학협력단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전임교원·직원·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"교직원 등"이라 한다)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 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,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발명"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·저작·실용신안·의장·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,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,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·기술정보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.
2. "직무발명"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대학의 사업 범위에 속하며,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로서, 교직원 등이 대학, 대학 산하 법인 및 정부 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.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대학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,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.
3. "자유발명"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.
4. "발명자"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.
5. "외부발명자"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.
6. "지식재산권"이라 함은 산업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등) 및 저작권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 등)의 취득·처분·관리·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그 밖에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## 제2장 지식재산권의 신고, 심의 및 출원

**제4조(지식재산권의 귀속)** 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목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이 이

를 승계하고,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대학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. 다만, 외부발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모두를 승계 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별지 제1호 서식>의 연구계약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5조(직무발명의 신고)** ① 발명자는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발명자는 직무발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신고서
2. 별지 제3호서식의 발명의 내용 설명서
3. 별지 제4호서식의 양도증
4. 별지 제5호서식의 선행기술조사서
5. 별지 제6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 승인요청서(우선심사신청 시)

**제6조(자유발명의 신고)**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.

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권리승계결정의 통지)**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한 발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의뢰를 거쳐 그 특허출원 지원여부 및 권리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.

② 산학협력단이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, 해당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본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결과를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특허출원)**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특허출원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출원, 등록 및 기타중간사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예산 범위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비용처리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의2(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)** ① 산학협력단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재산권에 대하여 그 동안의 기술이전 실적등을 고려하여 등록유지 여부를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의뢰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의하여 등록유지를 포기한 지식재산권을 발명자 또는 그 밖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, 권리의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리 승계자가 부담한다.

##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

**제9조(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)** 대학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

**제11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
2.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·등록·처분·실시·기술이전 여부
3.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
4.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
**제12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심의 시,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13조(수당)** 임명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4장 보 상

**제14조(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)** ①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 등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동일 건으로 2회 이상의 실시료를 받는 경우 소요경비의 공제는 1회로 한정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발명자 등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발명자 50%, 산학협력단 40%, 발명자가 지정하는 학과 또는 연구소 10% 등으로 한다.
2.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의 보상금은 발명자70%, 산학협력단 20%, 발명자가 지정하는 학과 또는 연구소 10% 등으로 한다.
3. 소속부서는 발명자가 정할 수 있다.

③발명자가 제2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.

④발명자를 제외한 교내·외 기술이전 실시기여자에게 제2항에서 정한 산학협력단 지분의 20% 범위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등록보상금)** ①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등록 시 「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출원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「실용신안법」 제

25조제2항에 따라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 한다.

1. 국내특허의 경우 50만원
2. 국외특허의 경우 200만원
3.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 100만원

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한다.

**제16조(부서별 기술이전관련 담당교수 운용)** 부서별 기술이전관련 담당교수를 운용할 수 있으며, 해당교수는 소속부서의 연구 활동, 보유기술의 소개 및 홍보, 외부의 기술적 자문에 있어서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.

**제17조(퇴직 및 사망 시의 보상금)** ① 발명자가 전직·퇴직 및 사망한 경우 또는 외부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.

② 발명자 등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.

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,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18조(발명자의 의무)**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 특허권 설정등록,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 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.

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비밀유지 의무)**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의장법」, 「상표법」, 「저작권법」, 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」, 「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」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,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# 연구 계약서

연구과제명 :

계약당사자 :

○○주식회사 대표이사 ○○○(이하 "갑"이라고 한다)

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○○○(이하 "을"이라고 한다)

연구책임자 :

목포과학대학교 교수 ○○○(이하 "병"이라고 한다)

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"갑"과 "을"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.

**제1조(목적 및 범위)**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붙임 연구계획서의 연구 목적과 같다.

② 이 계약의 범위는 붙임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, "병"이 연구완료 후 "갑"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한다.

**제2조(기간)** 이 계약의 기간은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까지이며, "갑"과 "을"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**제3조(연구비 금액 및 지급조건)** ① 이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 가운데 직접연구비는 금    원정(W    )으로 한다.

② 이 연구에 필요한 간접연구경비는 총 연구비의 (10)%로 한다.

③ 연구비 총액은 금    원정(W    )으로서, 전액 "갑"이 부담하며 "갑"은 아래와 같이 2회로 나누어서 "을"에게 지급한다.

- 1차 경비(50%): 금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정(W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 )  
(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)

- 2차 경비(50%): 금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정(W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 )  
( 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)

**제4조(연구보고서 제출)** "병"은 연구종료 후 이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○부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**제5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** ① "갑"과 "을"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"병"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"갑"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"갑"과 협의하여야 하며, "갑"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"병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비밀유지의 의무)** ① "갑", "을", "병"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"병"은 "갑"이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.

**제7조(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)** 이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험제품은 "갑"의 소유로 하고,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"을"의 소유로 한다.

**제8조(연구결과 창작된 발명의 귀속 등)** ① 이 연구결과로 창작된 발명.고안.의장.컴퓨터프로그램.배치설계(이하 "발명 등"이라고 한다)는 "갑"과 "을"이 공동소유(또는 "을"의 단독소유)한다.

②제1항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설정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실시료 등 수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)**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이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"을"에 귀속된다.

**제10조(명칭 사용)** "갑"은 사전 승인 없이 "을"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.판매촉진, 그 밖에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"을"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**제11조(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)** "갑"과 "을"은 상호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.

**제12조(손해배상 및 보호책임)** ① "갑"과 "을"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"갑"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.소송.고소로부터 "을"과 "병"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. 다만, "을" 또는 "병"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.

**제13조(계약의 해지)** ① "을"과 "병"이 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"갑"이 연구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,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, 연구보고서는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, 연구비는 계약해지 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.

**제14조(계약의 해석)**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"갑"과 "을"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15조(계약의 변경)** "갑"과 "을"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.

**제16조(계약의 효력)** 이 계약은 "갑"과 "을"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.

붙임: 연구계획서 1부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○ ○ 주 식 회 사    대표이사    ○ ○ ○ (인)

주 소:

목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   단장    ○ ○ ○ (인)

주 소: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-1

※ 제3조 관련 : 직접 연구비와 간접연구경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

구 분	세 부 비 목
직접연구비(A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건비: 책임연구원, 공동연구원, 연구보조원</li> <li>○ 경비: 기자재구입비, 임차료, 재료비, 전산처리비, 위탁개발비, 회의비, 여비, 인쇄비, 공공요금 등</li> </ul>
간접연구경비(B)	직접연구비 × 간접연구경비 적용률(%)
연구비 총액	(A)+(B)

※ 제8조 관련: 특허권을 "갑"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명문화할 것

1. 특허출원.등록.유지비에 관한 부담비율
2. 특허권을 공유하는 "갑"이 이를 스스로 실시할 경우 "을"에 대한 보상조건 및 기준
3. 특허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허용의 조건
4. 분쟁 발생 시의 처리 방향



## 발명내용 설명서

### 1. 발명의 명칭

국문 :

영문 :

### 2. 도면의 간단한 설명

### 3. 발명의 상세한 설명

3.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

3.2 그 분야 종래 기술의 문제점

3.3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(발명의 목적)

3.4 발명의 구성 및 작용(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)

3.5 발명의 효과

### 4. 특허청구 범위

(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)

### 5. 도면



<별지 제5호 서식>

<b>선행기술조사서(국내.국외)</b>		
1. 산업재산권(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)조사 [한국특허정보원( <a href="http://www.kipi.or.kr">www.kipi.or.kr</a> ), 한국과학기술정보원( <a href="http://www.kisti.re.kr">www.kisti.re.kr</a> ), DB 등 이용]		
기존 특허 제목, 특허번호, 일자 등	이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?(신규성 등)	이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? (진보성 등)
2. 참고문헌, 학회지 등		
문헌명, 저자명, 페이지 등	문헌내용(이 발명과 관련된 요 점만 간단히)	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 명의 특징은 무엇인가?

<별지 제6호 서식>

우선심사신청 승인 요청서			
발명의 명칭			
발명자	소 속	직 위	성 명
		교 수	
우선심사 신청 사유			
우선심사신청에 따른 기대효과(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중심으로)			
위의 사항에 의거하여 해당 발명의 우선심사신청 처리를 요청 합니다.			
년 월 일			
발명자 : 소속학과		성명	(인)
<b>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</b>			